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기획조정실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1일, 정경민 의원 외 37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
- 2023년 6월 19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
- 2023년 8월 30일 상정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경민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 출자·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정관 및 예산·결산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출

자・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,

○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조의2)

○ 출자・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6조의2)

○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)

○ 출자・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협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19조의2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첫째,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, 둘째, 출자·출연기관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, 셋째, 정관 작성·변경 협의결과 및 예산·결산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됨.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4조의2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규정임.

- 도 산하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등의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「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지방출자출연법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< 경상북도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>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**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」및 **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**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출자·출연 기관"이란 경상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-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,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(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)이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<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>

제2조(정의)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,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
가. 지방직영기업
나. 지방공사
다. 지방공단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
4. 「민법」에 따른 사단법인

○ 안 제6조의2는 출자·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규정임.

- 도에서 출자·출연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, 도민 의견수렴과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현행 「지방출자출연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기관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,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[1])를 두고 있음.

---

1)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기관(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포함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1.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
2.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
3.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기관을 통합·폐지·분할하는 경우에는 설립·운영하는 경우와는 달리 현행법령상 타당성 검토나 이에 대한 공개,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통·폐합 관련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.

※ 지방출자출연기관 통·폐합 관련 내용을 담은 「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천준호 의원 대표발의, 2022.11.24.)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.

- 이러한 상황에서 출자·출연기관 통·폐합 시 설립에 준하는 절차들을 이행하여 정치적 필요 등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통·폐합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13조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 사업의 경영성과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임.

- 행정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・인력이 한정된 만큼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'위탁' 혹은 '대행'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.

- 공공기관 대행 사업은 민간위탁과 달리 별도의 검토 및 평가 절차 없이 사업을 맡길 수 있으며, 대행 사업이 임의로 다수 선정되어 개별부서 간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사업 전문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, 평가 역

---

1. 다른 법률(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 」은 제외한다)에 출자・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
2.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・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・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・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・출연 기관의 설립・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 대행을 맡긴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연장하는 등 예산 낭비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
-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19조의2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협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출자·출연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및 정관 및 예산·결산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도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단초를 제공한다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「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가 「지방출자출연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붙임 참조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3년 8월 30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 제1호에서 “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”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4조의2(인사교류)를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4조의2를 삭제함.

3. 수정안: 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: 없음

6. 수정안 본문: 붙임

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인사교류) ① 도지사는 출자·출연 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등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.</u> <u>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사교류를 위해 경상북도 공공기관 인사교류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
	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인사교류 대상 직원의 직급,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2.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와 공공기관등의 장은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공분야,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, 승진임용·전보·근무성적평정·교육훈련·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.	

경상북도 조례 제 호

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심의위원회"를 "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) ① 도지사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라 공개하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

2.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·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3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
4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경영성과”를 “경영성과(대행 사업의 경영성과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“보고서”를 “보고서(대행 사업 상세 실적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도의회에 대한 보고)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

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월 1일 이후 통폐합하려는 출자ㆍ출연 기관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<신 설>	제6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--- 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2(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) ① 도지사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라 공개하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도지사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

		한다. 이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 1.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 2.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·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.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

	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제13조(경영실적 평가 등) ①·② (생 략)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, 경영성과, 업무의 능률성,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,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,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④ (생 략)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.·4. (생 략) ⑥ (생 략)	제13조(경영실적 평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 경영성과(대행 사업의 경영성과를 포함한다)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보고서(대행 사업 상세 실적을 포함한다) 3.·4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9조의2(도의회에 대한 보고)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

	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